

광산업체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절차 |

고권석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 서론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무역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중국을 도외시하고는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15년간 노력을 해오는 와중에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이미 투자를 하여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중 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더욱 더 중국 진출 러쉬가 예상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법률, 제도, 기타 경제환경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몇 년 안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불리한 영향인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외국기업에게는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기업의 중국 러쉬는 계속될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래저래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세계 경제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진출은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진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직접투자형태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2.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1) 외상투자기업의 개념

外商投資企業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私的 자격으로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중국 내에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설립에 참여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각종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설립에 참여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주체국적설을 채택하여 외국인이 설립에 참여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설립한 기업을 곧 외상투자기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설립에의 참여 혹은 독립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 중 설립에의 참여라는 것은 외국인이 중국인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中外合資經營企業(이하 “合資企業”이라 칭한다)과 中外合作經營企業(이하 “合作企業”이라 칭한다)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본전부를 외국인이 제공하여 外商獨資企業(이하 “外資企業”이라 칭한다)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사적 자격으로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하거나 간접투자는 외상투자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외상투자기업은 대외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중국국적을 갖는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중국기업이고, 둘째는 외국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중국 내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경제조직으로서 지점이나 대표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다. 이와 같이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이 아니다.

2)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외상투자기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눌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참여하여 설립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으로 나뉜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중외합자경영기업

1)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개념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영조직 및 개인이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얻어서 중국 내에 중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 및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특징

① 중외합영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외자기업과 비교해서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국합영자와 외국합영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외국합영자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외국 개인은 자기 개인의 명의로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개인은 합영자가 되지 못한다. 중국합영자는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다.

②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 및 위험을 분담한다.

공동투자라는 것은 법인 설립 시에 중국 측과 외국 측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의 불입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것인데, 공동 투입한 자본이란 비단 화폐뿐만 아니라 건축물, 공장, 기계설비, 특허

권, 기술 및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현금을 제외한 실물자산이나 기술을 투입할 때에는 그 평가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등록자본의 외국합영자의 출자비율은 반드시 25%이상이어야 한다.

공동경영이라 함은 각방이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각방은 합자기업의 권력기구 및 경영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동사회(한국의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인원수는 각방의 협상에 따라 계약서 및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동사장(한국의 대표이사)과 부동사장은 어느 일방이 동사장을 담당하게 될 경우 다른 일방은 부동사장을 담당하게 된다.

동사회는 최고의 권력기구로써 합영기업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동사회의 정원은 3인 이상이며, 동사(한국의 이사)의 수는 각방이 출자비율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사의 수가 협상의 산물이지 반드시 출자의 비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동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자기업 정관의 개정, 합자기업의 해산, 합자기업의 등록자본의 증가, 지분의 양도, 합병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동사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한국기업측이 지분상의 우위를 점한다 할 지라도 중요사결정기구인 동사회가 지분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어떤 결정은 동사의 만장일치를 요구해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합자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경영관리기구는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경영관리기구는 총경리 1인과 부총경리 약간인으로 구성된다. 총경리는 동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집행하고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총경리와 부총경리는 동사회에서 임명하며 중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담당가능하다.

③ 공동으로 손익 및 위험을 분담한다.

합영 각방은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 받고 손실 및 위험을 분담한다. 합영기업이 획득한 이윤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및 각종의 기금을 공제한 후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또한 청산의 경우에 잔여 재산은 각방의 출자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④ 합작기업은 중국법인이므로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합작기업은 중국법인이다. 즉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국경 내에서 성립한 법인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률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3)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형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 형태와 고분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 형태 양종으로 존재할 수 있다.

① 유한책임공사

한국의 유한회사와 흡사한 회사이다. 그러나 약간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고분유한공사

고분유한공사는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다른점도 있다.

4. 중외합작경영기업

1)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개념

중외합작경영기업이란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특징

합작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의 한 형태로서 다른 외상 투자기업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① 합작기업의 법률 기초는 계약이다.

합작기업은 계약식 합영기업에 속한다. 이것이 다른

외상투자기업과 명백히 다른 점이다. 합작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합작기업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쌍방의 지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외합작의 설립, 투자 지분 및 합작 조건, 수익의 분배, 위험 및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 방식 및 합작기업 재산 분배 등이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계약이 합작기업의 법률 기초가 되는 것이다.

② 합작기업 조직 형식은 선택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법인 형태로도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기타 조직으로도 가능하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중국 법률에 의해서 법인 조건을 갖출 때는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민사법에 의하여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③ 합작기업은 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이 다르다.

법인 자격을 갖는 합작기업은 법인 전부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법인의 재산이 대외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합자기업과 비슷한 점이다. 법인 자격을 갖지 못하는 합작기업은 중국 민사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상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3)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평가

합작기업은 중국이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없다. 이 형태는 지분의 비율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첫째,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설립이 자유롭다. 외국합작자는 현금뿐만 아니라 설비,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합작자는 토지사용권, 공장, 노무 등을 출자하여 보다 쉽게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은 자본 및 수익의 회수에 유리하다. 합작기업은 수익의 분배나 투자의 회수를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합작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투자원금이나 이윤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융통성이 강하다. 합작기업은 계약식 기업이므로 각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설립과정, 투자방식, 관리방식, 수익배분방식 등 많은 방면에서 융통성이 있다.

5. 외자기업

1) 외자기업의 개념

외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중국 내에서 투자자본 전부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치한 지점이나 대표처는 외자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외자기업의 특징

①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이 점이 외국기업과 다르다.

외국기업은 외국 법률에 의해서 중국 내에 필요한 등기수속을 하여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외국 국적을 갖고, 중국은 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속지관할권은 가지나 속인관할권은 갖지 못한다.

② 외자기업은 투자자본의 전부가 외국투자자에 의해서 소유된다. 이 점이 외자기업이 합작기업이나 합작기업과 구별되는 점이다. 합작기업이나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 측의 합자자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외자기업은 중국 투자자 없이 외국 투자자만으로 설립된다.

③ 외자기업은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책임을 부담한다.

3) 외자기업의 형태

외자기업은 법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비법인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법인 형식을 취할 경우는 유한책임공사가 일반적이지만 허가를 받아서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공사의 형태를 가질 때에 외국투자자는 대외의 부채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기타 형식을 취할 때는 중국의 유관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다음호에 11편이 소개됩니다.)

